[별표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분류	세부 내용
1.범죄의 주체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의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의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경찰관 범죄(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교통사고사건 중 경상의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에 관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의 범죄
2.범죄의 대상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경찰관, 교도관, 법관, 검사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대규모 국책사업·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공공시설을 파괴 또는 그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을 공격한 사건
3.수사의 태양	수사본부 또는 수사전담팀 편성이 필요한 사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이 필요한 사건 중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다른 해양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타 기관(경찰청·국방부·국세청·국정원 등)과 공조수사 또는 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집중(통합)수사 등 해양경찰청에서 수사지시(지휘)한 사이버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사건
	화재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주건조물방화(다만,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거나 수단·방법이 명확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② 연쇄방화(원인불명의 화재를 포함) 및 관공서, 학교, 주요 문화재 기타 중요시설에서의 실화사건(다만, 원인이 명확하고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통화위조·동행사사건 중 범죄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공문서위조·변조·동행사사건 및 유가증권 위조·변조·동행사사건 중 사회의 존립에 위험을 발생시켜 현저하게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
	집단 또는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증·수뢰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살인 및 강도사건(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경우에는 '5.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에 해당할 시 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한 상해, 상해치사 사건
	과실치사상 사건(교통사고사건은 제외한다)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의 사건
	약취·유인, 체포·감금사건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인신매매사건
	절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피해액이 1천만원 상당 이상인 사건 ② 조직적인 절도사건 중 피의자 또는 범죄 건수가 다수인 사건 ③ 신종 또는 특이한 수법으로 분석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건
	피해액 5억원 이상 또는 범행 수법이 특이한 사기, 공갈, 횡령·배임 사건
	치사를 수반한 결과적 가중범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특별법 위반의 죄 중 중요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선거관계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금융 관련범죄, 증권거래 관련범죄, 기업경영 관련범죄,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
	폭력단체 관련범죄
	약물에 관한 범죄
	총기를 사용한 살인・강도・절도・폭력사건, 총기 불법 유통사건
	환경 관련 범죄 중 조직적, 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위험물 관련범죄 중 위험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공공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
	풍속관련 범죄 중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실종・아동학대・소년범죄 중 범행수법이 특이하고 잔인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선박사고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충돌도주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② 인피사고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③ 범행수법이 특이한 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공안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국가보안법위반의 죄 ② 군형법중 반란・이적의죄・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③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④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사건 ⑤ 안보관련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관련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주요 정부기관・공기업・민간업체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건 ②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여 5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국내 50대 이상 서버・PC를 감염시킨 피의자 검거 ④ 신종 해킹 사건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 중 피해자 100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인 사건
	피해자 50명 이상 또는 피해액 2천만원 이상 이거나 범행수법이 특이한 피싱・파밍・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제공한 피의자 검거 ② 부정하게 취득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웹하드・불법사이트 등을 이용한 운영자급 주범 검거 ② 성착취물 등 제작・유통하여 3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기타 사이버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중요 사건 ① 사이버도박 - 총 매출액(입금액 기준) 1천억원 이상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 ② 사이버저작권 침해 ―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몸캠피싱 ― 피해자 10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 ④ 사이버선거 - 모든 사이버선거 사건 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 ⑥ 사이버범죄 관련 지명수배・통보 10건 이상 수배자 검거 사건
5. 기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아래의 사건 ① 범인검거, 피해자 보호 등 수사를 위해 타관서와의 공조, 지방해양경찰청 직접수사부서의 투입 등 지원이 필요한 사건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